##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남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66 발의연월일: 2025. 4. 11.

발 의 자 : 김남근 • 권향엽 • 김동아

김문수 · 김용만 · 김 윤

김한규 · 문금주 · 박선원

박지원 • 박해철 • 백승아

양부남 • 이광희 • 이기헌

이용우 • 이재강 • 임미애

임호선 · 정동영 · 채현일

최민희 · 황정아 의원

(23일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"청소년 쉼터"등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가정 밖 청소년이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, 청소년복지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를 방문하며 통해 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.

그러나 청소년복지시설들 대부분은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이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립 지원도 부 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(이하 "청소년복지법"이라 한다) 제32조의3 (자립지원)제1항제1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주거 지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, 자립지원이 필요한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하고 있으나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은 자립지원이 필요한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거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정하지 않고 있음.

그래서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청소년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8조, 제48조의4,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, 동의서 제출,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가정 밖 청소년을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,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「주거기본법」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가정 밖청소년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2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4(주거 자립지원) ①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위하여 다중공주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하여 다중공주택 특별법」 제48조, 제48조의4,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, 동의서 제출,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가정 밖 청소년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.

②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「주거기본법」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2조의4(주거 자립지원) ① 청
	소년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복
	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
	소년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하
	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8
	조, 제48조의4, 제48조의8의 공
	공임대 지원 신청, 동의서 제
	출,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
	를 가정 밖 청소년을 대리하여
	<u>할 수 있다.</u>
	②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
	<u>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</u>
	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
	주거지원센터 또는 「주거기본
	법」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
	장에게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
	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
	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
	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
	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.